

보도시점 2024. 7. 21.(일) 12:00 배포 2024. 7. 19.(금) 15:00

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'절세단말기'... 알고 보니 '탈세단말기'

-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, 미등록PG업체 이용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 해주세요!

- □ **국세청**은 고물가·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**자영업자**를 **지원**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**성숙한 세정환경 조성**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 -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,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, 전자(세금)계산서,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 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
 - **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**를 위해 **금융위원회에 등록**¹⁾한 **전자지급결제대행**(PG) **업체**²⁾(이하 결제대행업체)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**결제대행자료**를 활용 하여 **홈택스**에서 **신고 도움자료**³⁾, **미리채움 서비스**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 - 1) 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(fine.fss.or.kr) 통해 '전자금융업등록현황' 확인 가능
 - 2) 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참고1
 - 3) (경로) 홈택스 → 세금신고 → 부가가치세신고 → 신고도움서비스
- □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**결제대행업체**는 '절세단말기' 등 허위 광고로 **자영업자**로부터 **과도한 수수료**(약 7~8%)를 **편취**하면서 **세금**과 **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**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**상대적 박탈감**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.
 - **미등록 결제대행업체**는 실제로 **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**하면서 금융 위원회에 **등록하지 않고**,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**결제대행자료**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**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** 부추기고 있습니다.
 - **일부 자영업자**는 '절세단말기'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**미등록 결제대행** 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하여 세금 등을 **탈루**한 경우도 있습니다.

|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 | -

- [1] '절세단말기·분리매출·카드매출 현금화' 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
-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
- ③ 세금·건강보험·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·비과세 단말기로 광고

- □ 국세청은 **공정세정**과 건전한 **시장질서를 확립**하기 위해 **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** 및 **적발**, 가맹점 대상으로 **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*** 등 전방위적으로 **미등록 결제대행업체**의 **불법행위에 엄정 대응**하고 있습니다.
 - * 「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」 안내 사항 참고2
 - 특히 이번 **부가가치세 성실신고**를 지원하고 **적극행정**을 구현하기 위해 **홈택스** 「신고도움서비스*」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.
 - * (경로) 홈택스 → 세금신고 → 부가가치세신고 → 신고도움서비스
 - 또한, **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**한 **혐의**가 있는 **가맹점**에 대해서는 **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**을 정기적으로 **실시**하고 있습니다.
 - **빅데이터 분석**을 이용해서 **적발**한 **미등록 결제대행업체**로부터 **확보**한 **실 가맹점 매출자료**를 통해 **성실신고 여부**를 면밀히 **검증**하여.
 - 부가가치세 **매출누락 사실**이 **확인**되면 무·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**부가가치세 수정신고**를 **안내**하고 있습니다.

------|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 [참고3] |-

- □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한 사례
- ②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
- ③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
- □ 아울러, 국세청은 **금융감독원**과 **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**, 실무 협의 등 긴밀한 **공조체제**를 **유지**하면서 불법행위에 **공동 대처**하고 있습니다.
 -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**가맹점 사업자**는 **성실납세**가 **최선의 절세**임을 명심하시어 **절세단말기**에 **현혹되지 않도록 주의**하시기 바라며,
 - 신고오류로 인한 **가산세* 부담** 등 **불이익**을 받지 않도록 **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**를 **확인**하고, **미등록 결제대행업체**를 통한 **매출액**을 반드시 **포함** 하여 **성실**하게 **신고**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 - * 무신고·과소신고가산세 (최대 40%), 납부지연가산세 (미납일수 당 0.022%, 연 8.03%) 등

담당 부서	개인납세국	책임자	과 장 김용재 (044-204-3201)
<총괄>	부가가치세과	담당자	사무관 신범하(044-204-3222)
<협조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 백규정(02-3145-7120)
	금융IT안전국	담당자	팀 장 최범전(02-3145-713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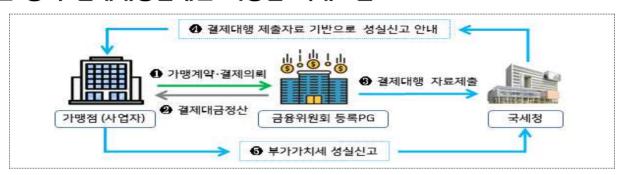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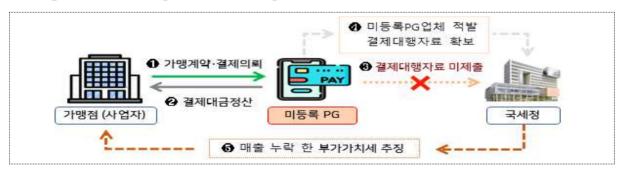
참고 1 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

□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



- 금융위원회에 등록¹⁾한 **결제대행업체는** ¹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결제를 대행, ²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·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 지급, ³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'결제대행자료'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²⁾하고 있음
 - 1) 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8조(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), 전자금융업 등록 후 영업
 - 2) 결제 대행 시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(부가가치세법 제75조)
- 국세청은 ⁴ 결제대행자료를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, 미리채움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며,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⁵ 부가가치세 등 신고

□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흐름



- **미등록 결제대행업체***는 ^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**매출결제**를 **대행**, ^②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·수령하여 **가맹점에 대금 지급**, ^③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**'결제대행자료'**는 **국세청**에 제출하지 않음
 - * 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등록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(전자금융업)를 영위하는 업체
- 국세청은 ⁴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**가맹점 매출자료**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하여 ⁶매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또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추징

참고 2 「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」안내 사항

'절세단말기'를 가장한 **탈세 광고**에 현혹되지 않도록 <mark>주의</mark>하세요



가맹점(사업자)과 신용카드사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결제대행업체(PG사)*는,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











 결제대행(PG): 신용카드사와 가명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·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명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

일부 PG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허위 광고를 하며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함

미등록 불법 PG사의 허위광고 예시

- 사장님들의 세금을 절세단말기로 줄여드립니다!
- 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입니다!
- G 최근 절세의 목적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사용합니다!
- 세무상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!

🋕 미등록 불법 PG사의 카드단말기 이용 시 문제점

미등록 불법 PG사는 '절세단말기'를 가장한 허위광고로 가당점을 모집하고 있지만

0

실상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

마음목 결제대행업체



추후 가명점의 **때출 누락**이 확인되면, 가명점은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·소득세분만이 아닌 고율의 가산세(AICH 40%)까지 납부하여야 함

비등 되PC문양기등 이용한 폐술금액을 산고 부탁한 경우, 자진 수정신고 가능
2년 이내 수정신고사 산고물실상 가전에 감연되어야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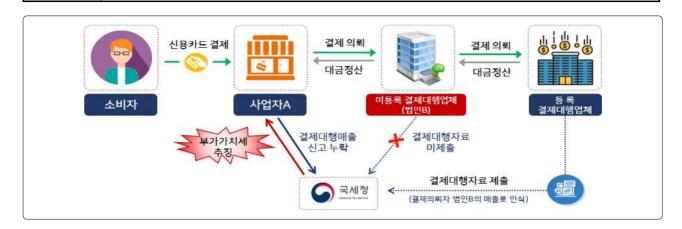
등록 결제대행업체 확인 방법

○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(fine.fss.or.kr) : 금융회사 정보 →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



참고 3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사례

사례 1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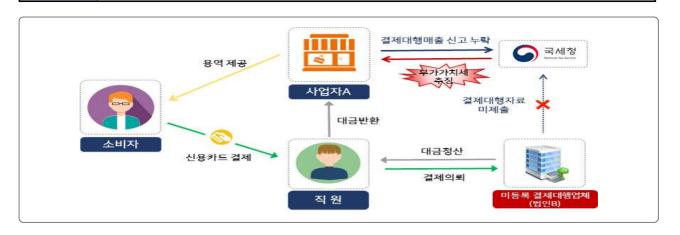
□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

- 음식업 영위 사업자 A는 '절세 단말기', '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'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(법인B)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음
 - 부가가치세 신고 시 **홈택스**에서 **조회**되는 **결제대행 매출자료** 금액만을 **과세표준**으로 **신고함**
 - * 미등록 결제대행업체(법인B)는 부가가치세,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
-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, 사업자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

□ 올바른 신고방법
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(부가가치세법 제29조)
- **홈택스**에서 조회되는 **결제대행 매출자료**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**결제대행업체**가 **제출**한 **자료**를 제공한 것으로
 - 이 경우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**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여** 부가가치세를 **신고**하여야 함

사례 2 직원명의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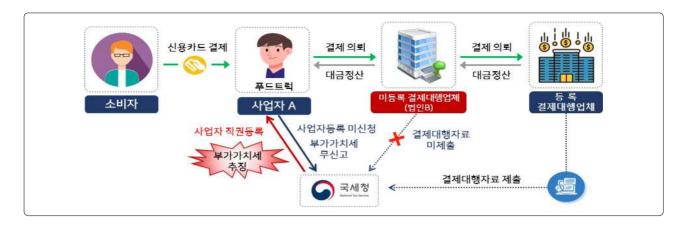
□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

- 헬스장 운영 사업자 A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**미등록 결제대행업체**와 **공모**하여 **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**하고,
 - **헬스장 이용대가**를 **직원 명의 단말기**를 이용하여 **결제**한 후 직원 으로부터 **해당 금액**을 **반환**받음
 - 부가가치세 신고 시 **홈택스**에서 **조회**되는 **결제대행 매출자료** 금액 만을 **과세표준**으로 **신고**함
 - * 미등록 결제대행업체(법인B)는 부가가치세,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
-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**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**를 이용한 **매출액**을 **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**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**부가가치세** 00백만원 **추징**

□ 올바른 신고방법

-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(국세기본법 제14조)
- 이 경우 **매출 분산 목적**으로 **직원 명의**를 이용하여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**해당 대가**는 **사업자A**의 **매출액**에 **포함**하여 신고해야 함

사례 3 미등록 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



□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

- **푸드트럭을** 운영하는 **미등록 사업자A**는 소비자에게 **신용카드 결제**를 거부하고 현금결제 만을 요구하여 지속적 **마찰 발생**
 - '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'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함
-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가 **사업자 등록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**한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**사업자 직권등록** 및 **부가가치세** 00백만원 **추징**
 - * 미등록 결제대행업체(법인B)는 부가가치세,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

□ 올바른 신고방법

-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·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(부가가치세법 제6조, 제8조)
- 이 경우 **사업자A**는 사업을 위한 **고정된 장소***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**사업자등록**을 하여야 하며, 부가가치세 등 **관련 제세 신고** · **납부 의무를 이행**하여야 함
 - *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**과세표준 및 세액**을 **결정·경정 당시 사업자 주소** 또는 **거소**를 사업장으로 함 (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)